

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 5 항중 "국무총리와 내무부장관에게"를 "내무부장관에게" 로 한다.

제11조중 "서울특별시와 타시·도간의 관련사항은 국무총리에게, 기타 시·도간의 관련사항은 내무부장관에게"를 "내무부장관에게" 로 한다.

제12조중 "내무부장관 또는 국무총리"를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7조(회의)①-④ 생략</p> <p>⑤회장은 협의회 개최후 14일 이내에 협의회 개최결과를 국무총리와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7조(회의)①-④ 현행과 같음</p> <p>⑤</p> <p>.....내무부장관에게</p> <p>.....</p>		
<p>제11조(미합의사항의 조정요청) 회장은 협의회에서 2회이상 협의해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와 타시·도간의 관련사항은 국무총리에게, 기타 시·도간의 관련사항은 내무부장관에게 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p>	<p>제11조(미합의사항의 조정요청)</p> <p>.....</p> <p style="text-align: right;">내무부</p> <p>장관에게.....</p> <p>.....</p>		
<p>제12조(협의를 사무처리의 효력)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나 내무부장관 또는 국무총리가 조정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p>	<p>제12조(협의를 사무처리의 효력)</p> <p>.....내무부</p> <p>장관이</p> <p>.....</p>		

首都圈行政協議會規約

第1條(目的) 서울特別市를 中心으로 한 首都圈關係 市·道單位 地方自治 團體間에 關聯된 行政事務의 一部를 共同으로 協議 處理, 하므로서 圈域內의 균형있는 發展과 廣域行政의 效率的인 推進을 圖謀하기 爲하여 首都圈 行政協議會(以下“協議會”라 한다)를 設置 運營한다.

第2條(事務所位置) 協議會의 事務所는 서울特別市에 둔다.

第3條(構成) 協議會는 首都圈行政關聯 地方自治團體인 서울特別市, 仁川直轄市, 京畿道, 江原道, 忠清北道로 構成한다.

第4條(組織) ①協議會는 會長 1人和 常任委員 및 非常任委員으로 構成한다.

②會長은 서울特別市長으로 하고 有故時에는 서울特別市 副市長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③常任委員은 仁川直轄市長과 京畿道知事로 非常任委員은 江原道知事와 忠清北道知事로 하되 부득이한 事由發生時 副市長 또는 副知事が 代理委員으로 參席할수 있으며 討議와 表決權을 갖는다

④會長은 協議會를 代表하며 會議를 召集하고 協議會의 事務를, 總括한다

第5條(機能) ①協議會는 다음 事項을 協議, 決定한다.

1. 隣接地域과 關聯되는 都市計劃의 樹立施行 및 變更에 關한 事項
2. 都市計劃 區域內의 建築 및 土地利用에 關한 事項
3. 公共施設의 設置 및 管理, 運營에 關한 事項
4. 隣接地域과 關聯되는 住宅團地 및 工業團地 等の 造成事業에 關한 事項
5. 行政區域 境界管理 等の 事務의 協議, 調整 또는 共同處理에 關한 事項
6. 漢江의 開發, 管理 및 水質保全에 關한 事項
7. 資源의 開發, 利用, 調査에 關한 事項
8. 環境汚染防止 및 監視에 關한 事項
9. 市·道間 連結버스路線의 新設, 延長 等 交通網擴張에 關한 事項
10. 主要 連結道路 等 道路網의 新設, 變更, 擴張, 鋪裝 等に 關한 事項
11. 首道圈 人口集中 抑制施策 推進에 關한 事項
12. 首都圈 廣域 上·下水道施設의 設置에 關한 事項
13. 開發制限 區域內에서의 共同監視, 團束 其他 이와 關聯된 事項

14. 資源 및 生産物의 需給調節에 關한 事項

15. 地方自治團體 相互間의 資料, 情報, 技術의 交換

16. 其他 廣域開發 및 廣域行政 遂行上 必要한 事項

②第1項 1號내지 12號 各號의 事項中 隣接地方自治團體와 事前, 協議를 必要로 하는 事項은 計劃確定 以前에 協議會에 案件을 上程하여 協議結果에 따라 處理하여야 한다.

第6條(協議方法) ①委員은 協議案件을 會長에게 書面으로 提出하여야 하며 會長은 實務協議會의 事前檢討를 받아 30日以內에 會議을 召集한다.

②協議案件의 合意는 參席委員 全員의 贊成으로 한다.

第7條(會議) ①協議會의 會議는 定期會議, 臨時會議로 區分한다.

②定期會議는 年2回로 하되 2~3月과 8~9月中에 會長이 召集한다.

③臨時會議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때 召集하되 會長은 委員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特別한 事由가 없는한 會議를 召集하여야 한다.

④會長은 會議가 있을때마다 協議案件을 準備하여 關係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미리 配布하여야 한다.

⑤會長은 協議會 開催後 14日以內에 協議會 開催結果를 國務總理와 內務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第8條(事務處理) ①協議會의 事務를 處理하기 爲하여 幹事1人과 書記3人을 둔다.

②幹事は 서울特別市の 企劃管理室 擔當官으로 하고 書記는 各 常任委員이 指定하는 企劃管理室 所屬係長 1人으로 한다.

第9條(會議錄 作成) 協議會의 幹事は 會議錄을 作成 管理하여야 한다.

第10條(資料提出要求等) 協議會는 事務處理를 爲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關係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資料의 提出, 意見의 開陳等 協助를 要求할수 있으며 其他 必要한 경우에는 關係 機關 公務員의 意見을 들을 수 있다.

第11條(未合意事項의 調整要請) 會長은 協議會에서 2回以上 協議해도 合意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서울特別市와 他市·道間의 關聯事項은 國務總理에게, 其他 市·道間의 關聯事項은 內務部長官에게 이에 對한 調整을 要請하여야 한다.

第12條(協議 및 事務處理의 効力) 關係 地方自治團體는 協議會가 決定한 事項이나 內務部長官 또는 國務總理가 調整한 境遇에는 이에 따라 그 事務를 處理하여야 한다.

第13條(諮問委員) ①協議會는 協議事項에 關한 諮問에 應하게 하기 爲하여 諮問委員을 들 수 있다.

②諮問委員은 國家의 特別行政機關의 長, 關聯公共團體의 長 및 關係 專門家中에서 協議會의 承認을 얻어 會長이 委囑한다.

③公務員이 아닌 諮問委員에 對하여는 協議會가 定하는 바에 따라 手當을 支給할 수 있다.

第14條(實務協議會) ①協議會의 效率的 運營을 爲하여 上程案件에 對한 實務的인 事前檢討가 이루어지도록 實務協議會를 構成 運營한다.

②實務協議會는 構成 地方自治團體의 企劃管理室長을 委員으로 構成하되 上程案件에 따라 關係局 課長이 陪席 參與하여 意見を 開陳할 수 있다.

③實務協議會 委員長은 서울特別市の 企劃管理室長이 되며 幹事 및 書記는 第8條 第1項, 第2項을 準用한다.

④會議는 實務委員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때 또는 實務委員의 要求가 있는 때에는 召集하여야 한다.

⑤實務委員長은 協議案件의 實務檢討 意見書를 本 協議會 會長에게 提出하고 本 協議會 開催時 그 內容을 報告하여야 한다.

第 15 條 (經費負擔) 協議會 및 實務協議會 運營에 必要한 經費는 會議를 開催하는 地方自治團體가 負擔하는것을 原則으로 하되 特別한 事由가 있을 때에는 協議會에서 따로 定하는 바에 의하여 負擔할 수 있다.

第 16 條 (會計) 協議會의 經理狀況은 每年 첫번째 會議時 幹事가 報告하며 協議會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 17 條 (規約改正) 이 規約의 改正은 委員全員の 贊成으로 한다.

第 18 條 (補則) 協議會가 運營上 必要한 其他事項은 協議會에서 따로 定한다.

附 則

이 規約은 1988年 11月 16日부터 施行한다.